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89조의2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 금액
가.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	
1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(이하 “부정제공”이라 한다)를 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		공사비의 100분의 20
2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		공사비의 100분의 15
3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		공사비의 100분의 10
4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		공사비의 100분의 5
나.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	
1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(이하 “시공외제안”이라 한다)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		공사비의 100분의 20
2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		공사비의 100분의 15
3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		공사비의

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 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		100분의 10
4)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 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		공사비의 100분의 5
다.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·감 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3조의2제1항제2호	
1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 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 우		공사비의 100분의 20
2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 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인 경우		공사비의 100분의 15
3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 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미만인 경우		공사비의 100분의 10
4)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 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 우		공사비의 100분의 5